

條 例 (案) 檢 討 報 告 書

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0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- .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이 1992년 개정 장기간 미조정, 요금 체계의 불균형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 타 시·군의 수수료 징수 사례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성 보다는 행정 서비스를 중요시하고, 타 행정 기관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